의 안 번 호

1432

[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3. 21.(수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3. 22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4. 17.(화)

2. 제안이유

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(장학생)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상한액 기준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새마을지도자 범위 정비(안 제1조)
- 나. 장학생 선정기한 명시(안 제4조)
- 다. 장학금 지급 상한액 기준 마련(안 제6조)
- 라.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(안 제8조)
- 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4. 근거법규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

5. 검토의견

- O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1급지 평준화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로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,
- O 법제처의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